

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

(앞쪽)

신청인	성명	
	기관명	

대상자	성명 (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)	
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/ 국적)	

취업제한 해당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있음 (취업제한대상자)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 없음
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○○○(경찰서장)

직인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²(재활용품)]

비고(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.)

-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(영문), 외국인등록번호, 국적을 적습니다.
- 취업제한 해당여부란에는 해당사항에 ○, V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.

성범죄 경력 유무 적용방법

1.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성범죄

<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(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)>

- 법률 제7조, 제7조의2, 제8조, 제8조의2 및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(제8조의 죄는 2012. 3. 16. 이후의 죄를, 제9조 및 제10조의 죄는 2013. 6. 19. 이후의 죄를 말함)
- 아동·청소년에 대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(제11조, 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'12. 8. 2. 이후의 죄를, 제12조의 죄는 '13. 6. 19. 이후의 죄를 말함)
- 아동·청소년에 대한 「형법」 제297조, 제297조의2,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, 제301조의2, 제302조,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(제297조의2의 죄는 '13. 6. 19. 이후의 죄를 말함)
- 아동·청소년에 대한 「형법」 제339조의 죄('10. 4. 15. 이후의 죄를 말함)
- 아동·청소년에 대한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제2호의 죄('10. 4. 15. 이후의 죄를 말함)
- 아동·청소년에 대한 「형법」 제342조의 죄[(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)는 '18.7.17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]
- ※ "아동·청소년"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(다만,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)

<성인대상 성범죄(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의2호)>

- 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」 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('10. 4. 15. 이후의 죄를 말함)
- 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」 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('13. 6. 19. 이후의 죄를 말함)
- 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」 제2조제1항 각 호의 범죄 중 형법 제342조(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)의 죄('16.12.20 이후의 죄를 말함)

2.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종류 및 적용시점·적용기간(법률 제15352호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및 제5조)

대상기관의 종류	형의 종류	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자				아동·청소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				형 확정 시점
		성범죄 발생 시점				형 확정 시점	성범죄 발생 시점		형 확정 시점	
		2006. 6. 30. ~ 2008. 2. 3.	2008. 2. 4. ~ 2013. 12. 31.	2010. 1. 1. ~ 2010. 4. 14.	2010. 4. 15. 이후.	2012. 8. 2. 이후.	2013. 6. 19. 이후.	2016. 11.30. 이후.		
① 유치원, 학교, 학원·교습소, 청소년 보호·재활센터, 청소년활동시설, 청소년쉼터, 어린이집, 아동복지시설	3년 초과 징역·금고	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		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					2018. 7. 17. 이후	
	3년 이하 징역·금고	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		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						
	벌금형	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		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						
② 체육시설	3년 초과 징역·금고	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		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						
	3년 이하 징역·금고	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		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						
	벌금형	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		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						
③ 성매매피해상담소, 청소년 지원시설,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	3년 초과 징역·금고	해당 없음	형 확정일 부터 5년간 취업제한	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						
	3년 이하 징역·금고	해당 없음	형 확정일 부터 3년간 취업제한	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						
	벌금형	해당 없음	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	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						
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	3년 초과 징역·금고	해당 없음		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						
	3년 이하 징역·금고	해당 없음		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						
	벌금형	해당 없음		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						
⑤ 개인과외교습자	3년 초과 징역·금고	해당 없음		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						
	3년 이하 징역·금고	해당 없음		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						
	벌금형	해당 없음		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						
⑥ 의료기관(의료인), 가정방문 학습 교사	3년 초과 징역·금고	해당 없음		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					법원은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취업제한신청을 신고	
	3년 이하 징역·금고	해당 없음		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						
	벌금형	해당 없음		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						
⑦ 장애인복지관(장애인)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·복합유통게임제공업·청소년활동기획업·대중문화예술기획업·청소년게임제공업·청소년실용갖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업장	3년 초과 징역·금고	해당 없음		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						
	3년 이하 징역·금고	해당 없음		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						
	벌금형	해당 없음		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						
⑧ 위탁교육기관	3년 초과 징역·금고	해당 없음		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5년간 취업제한						
	3년 이하 징역·금고	해당 없음		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3년간 취업제한						
	벌금형	해당 없음		형 확정일 부터 1년간 취업제한						
⑨ 고등교육기관, 학생상 담지원시설, 위탁교육시설, 아동복지통합서비스수행기관,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서비스제공 기관·단체	3년 초과 징역·금고	해당 없음								
	3년 이하 징역·금고	해당 없음								
	벌금형	해당 없음								